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을 치료감호 등 대상자에 포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6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반사회적 인격장애인을 치료감호 등 대상자에 포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5.
3. 회 부 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III. 검토의견

1.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을 치료감호 등 대상자에 포함

- 개정안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을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임 (안 제2조제1항제4호 등).

현 행	개정안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는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u>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는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u>

현행	개정안
	<u>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u>

□ 현행법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①심신장애인, ②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 ③정신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이에 해당함.

또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로 규정하여 ①심신장애인, ②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이에 해당함.

□ 최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해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연구 결과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수임이 밝혀지고 있어,¹⁾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의 대상자에

1) 윤정숙 등,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치료감호대상자에 추가하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공감 능력 부족’ 및 ‘죄의식이 결여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는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측면이 있음.

○ 미국 정신의학회가 사용하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DSM-5)²⁾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명시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의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임.³⁾

2)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은 인격장애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결과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로 정의하며 사회적 규범의 지속적 위반, 충동성, 무책임성, 죄책감 결여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진단하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psychopath), 소시오패스(sociopath) 등과 유사한 면이 있음.

3)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본문 개정판(DSM-5-TR)

- 환자가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며 다음 중 적어도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해야 함.

1. 법을 무시함(체포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 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남을 기만함(개인적인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가명을 쓰거나,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남).
3.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음.
4.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임(지속적으로 몸싸움에 휘말리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본인의 안전 및/또는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데 개의치 않음.
6. 시종일관 무책임하게 행동함(향후 계획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7.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학대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경우 정형화된 치료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⁴⁾ 치료감호가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법무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마땅한 치료 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⁵⁾

□ 한편, 개정안에 따른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치료감호대상자에 포함하여 피치료감호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의 경우 15년을 넘길 수 없으며,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은 2년을 넘길 수 없음.⁶⁾

- 진단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함
- 15세 이전品行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함
- 반사회적 행동이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의 경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함

4) V. Falcao et al.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hat else can be done?, Eur Psychiatry. 2022 Sep 1;65(Suppl 1):S667 - S668

5) 제21대국회 제391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2.07.)

문 의 처
02-6788-5075

-
- 6)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